

挾書律 폐지에 대한 懷疑*

이 세 동**

<目次>

I. 머리말	IV. 惠帝는 왜 협서율을
II. 挾書律의 존재과정	폐지하였는가
III. 高祖와 협서율	V. 결 론

I. 머리말

挾書律은 진시황이 사적인 도서의 소유를 금지한 법령이다. 분서갱유와 함께 秦代 사상통제의 표징처럼 알려진 사건이지만, 이의 존재와 관련하여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모호한 사실들이 많아 여전히 논의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기왕의 논의들은 대체로 焚書와 동시에 이루어진 협서율의 시행과 관련하여서 주로 이루어졌다. 협서율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博士官은 책을 소장할 수 있었는지, 이때의 박사관은 박사 개인을 말하는지, 아니면 박사가 근무하던 관청을 말하는지, 法家를 포함한 모든 諸子書들도 일괄 소장을 금하였는지 등등의 문제들이다.¹⁾

한편, 《漢書》에서 언급하고 있는 惠帝 4년의 협서율 폐지와 관련해서

* 이 논문은 2012학년도 경북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경북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1) 이들 문제와 관련하여 해답을 모색한 최근의 논문으로는 李銳의 <秦焚書考> (《人文雜誌》, 2010年 第5期, 陝西省社會科學院)가 있다.

는 그간 사서의 명확한 기록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 별다른 회의가 없었다. 전통시대의 학자들이 혹 이에 대해 언급하더라도, 혜제가 아니라 고조 때에 협서율이 폐지되었다면 더 많은 책이 보존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안타까움의 표백 정도였다.²⁾

그러나 과연 그럴까? 秦의 학정을 덜고자 法三章을 시행하였던 高祖가 그의 재위기간에 秦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서적의 私藏을 금하였을까? 만약 고조가 藏書를 금하지 않았다면 혜제는 왜 굳이 협서율을 폐지하였을까?

협서율 폐지와 관련한 현대의 논의들은 협서율의 시행과 관련한 논의에 비하여 절대량이 부족하다. 혹 이를 전문적으로 다룬 논문들도 대체로 협서율 폐지의 역사적 의의, 즉 반문명적 폭거였던 협서율을 폐지함으로써 서적의 유통과 장서의 공인 등이 이루어졌음을 찬양하고 기리는 내용 일색이다.³⁾

그러나 과연 그럴까? 혜제가 협서율을 폐지한 일이 과연 그렇게 의의가 있는 일이었을까? 혜제는 치밀한 구상을 가지고 문명의 재건을 위해 협서율을 폐지하였던 것일까? 그렇다면 서적의 수집 등 그 후속조치가 이루어졌던가? 만약 그렇게 의의가 큰 일이었다면 司馬遷은 이 일에 대하여 왜 침묵하였을까?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기존의 논의가 부족하였던 협서율의 폐지와 관련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합리적인 답안을 모색함으로써 秦·漢初의 문화적 분위기를 이해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기왕에 이루어진 협서율의 시행과 관련한 제반 문제들은 제2장에서 논증을 생략하고 합리적인 결론만 간략히 정리하기로 한다.

2) 王應麟, 《困學紀聞·卷2·書》: “若高帝能除挾書之律, 蕭相國能收秦博士官之書, 則倚相所讀者, 必不墜矣。”

3) 陳靜, <西漢“除挾書律”的歷史意義>, 《齊魯學刊》(曲阜師大), 2005年 第2期.
李玉安, <論《挾書律》>, 《圖書情報知識》(武漢大學傳播與信息學院), 2010年 第5期.

李宏玉, <淺談“除挾書律”>, 《科教創新》(雲南省科學技術廳), 2011年 第10期.

II. 挾書律의 존재과정

挾書律의 시행과 관련한 최초의 역사기록은 《史記》의 진시황 34년(기원전 213)조이다. 이 해에 진시황이 함양궁에서 주연을 베풀었다. 복야 周靑臣은 시황의 업적을 찬송하며 아첨하였으나, 박사 淳于越은 봉건을 폐하고 옛 것을 숭상하지 않음을 비판하였다. 이에 승상 李斯가 “폐하께서는 대업을 일으키어 만세의 공을 세우셨으니 실로 어리석은 선비[愚儒]들이 알 바가 아닙니다. 게다가 순우월이 三代의 일을 말하니 어찌 본받을 일이겠습니까?”⁴⁾ 하였다. 이어서 말하기를,

신은 청컨대, 사관은 진나라의 역사기록이 아니면 모두 소각할 것이며, 박사관청에서 직무상 소장하는 것을 제외하고⁵⁾ 천하의 사람들이 감히 《詩》, 《書》와 백가어를 소장한 경우는 모두 守와 尉에게 바쳐 태우게 할 것이며, 감히 서로 마주보고 《詩》, 《書》를 이야기하는 자는 棄市의 형벌에 처할 것이며, 옛 것을 들어 지금을 비판하는 자들은 멸족해야 할 것입니다. 관리가 사실을 알고서도 드러내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한 죄목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조령이 내려지고서 30일 이내에 소각하지 않는 자는 黥刑에 처하여 城旦에 충원하도록 하십시오. 없애지 말아야 할 책은 醫藥과 卜筮와 種樹의 책입니다.⁶⁾

- 4) 《史記·秦始皇本紀》 34년조: “今陛下創大業, 建萬世之功, 固非愚儒所知. 且越言乃三代之事, 何足法也?”
- 5) ‘非博士官所職’이라는 문장의 해석에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하나는 본고의 해석과 같이 관청에서 소장하였다는 해석이고, 다른 하나는 ‘박사관이 직무상 소장하는 것을 제외하고’라고 해석하여 박사 개인이 소장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본고에서는 秦代의 박사였던 伏生이 《尚書》를 소장하지 못한 사실에 비추어 관청에서 소장하는 것으로 보았다.
- 6) 《史記·秦始皇本紀》 34년조: “臣請史官非秦記皆燒之. 非博士官所職, 天下敢有藏詩·書·百家語者, 詣守·尉雜燒之. 有敢偶語詩書者棄市. 以古非今者族. 吏見知不舉者與同罪. 令下三十日不燒, 黥爲城旦. 所不去者, 醫藥·卜筮·種樹之書.”

이사의 이 건의는 시황제의 제가를 받아 시행되었다. 비록 사마천이 ‘挾書律’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으나⁷⁾ 협서율과 焚書의 원사료인 이 기록은 몇 가지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이사의 건의는 순우월의 비판을 재비판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그는 순우월을 ‘愚儒’라고 하였고, 儒者들의 是古非今 의식을 질타하였다. 이사는 진나라의 정치를 비판하는 유자들을 대상으로 이 법령의 시행을 건의하였던 것이다. 비록 《詩》, 《書》와 백가어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으나 《詩》, 《書》에 비해 제자서에 대한 탄압은 비교적 느슨하였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유가의 경전들이 漢代에 금고문 논쟁을 거쳐 재판집의 과정을 거쳤음에 비하여, 제자서들은 이에 비하여 문헌학적 논쟁이 심각하지 않은 이유이다.

둘째, 박사관청에는 유가의 경전들이 소장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사의 건의는 박사관의 직무에 따른 서적은 박사관청에 소장하도록 하였다. 비록 진대의 박사들이 모두 유가는 아니라 하더라도 유가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⁸⁾ 그들의 직무상 유가의 경전들이 소장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책들이 漢代까지 전해지지 못한 이유는 아마 蕭何가 한고조를 따라 함양에 입성하여 秦의 圖書를 수습할 때 승상부와 어사부의 율령도서들만 수습하였을 뿐,⁹⁾ 博士官의 경전들을 수습하지 못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소하가

7) 저명한 중국학자 李學勤은 이 법령이 시행될 당시에는 守와 尉에게 책을 바쳐 태우게 하는 일에만 주력하였고, 책을 소장[挾書]하는 자를 멸족하는 것은 법령이 장기간 시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추단하였다. 아마 그러므로 이사의 건의에 ‘挾書’라는 용어가 없었을 것이다. 李學勤의 <從出土簡帛談到<挾書律>>(黃留珠 主編, 《周秦漢唐研究》(三秦出版社, 1998) 제1책, 4쪽) 참조.

8) 기존의 연구들에 따르면, 진대의 박사관에는 文學과 方術, 名家 등의 인물이 있었으며, 동시에 伏生과 그의 스승 李克, 《한서·예문지》에서 유가로 분류한 羊子 등 유가의 인물도 있었다. 李銳, <秦焚書考>(《人文雜誌》, 2010年第5期, 陝西省社會科學院), 142쪽 참조.

9) 《漢書·蕭何曹參列傳》: “沛公至咸陽, 諸將皆爭走金帛財物之府, 分之. 何獨先入收秦丞相·御史律令圖書藏之. 沛公具知天下厄塞·戶口多少·強弱處·民所疾苦者, 以何得秦圖書也.”

수습하지 못한 서적들은 뒤늦게 입성한 項羽가 함양에 불을 질러 모두 태워버렸다. 그러므로 송대의 王應麟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이 소하의 실책을 안타까워한 것이다.¹⁰⁾

셋째, 협서율이 시행될 당시에는 책을 소장하면[挾書] 멸족당하는 형벌이 없었다. 협서율이 시행되고 나서 30일이 지나도록 책을 소각하지 않고 私藏하는 자는 墨刑에 처한 뒤 변방으로 보내어 성곽의 수축과 방어에 종사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협서하면 멸족하는 형벌은 李學勤의 견해¹¹⁾처럼 시행되는 과정에서 형벌이 점차 강화되면서 새롭게 보완된 규정일 것이다.

‘挾書律’이라는 명칭은 《漢書》에 처음 보인다. 漢 惠帝 4년(기원전 191) 3월 갑자일에 협서율을 ‘除’하였다는 기록이 처음 나타나고,¹²⁾ 그 주에는 ‘挾’은 ‘藏’의 뜻이라고 한 應劭의 말과 “秦의 율령에 감히 책을 소장하는 자는 멸족의 형에 처하였다.”고 한 張晏의 말이 인용되어 있다.¹³⁾ 어려서 등극한 혜제는 이 해에 冠禮를 행하고 이를 기념하여 죄수들을 풀어 주고 관리와 백성들을 괴롭히는 법령들을 폐지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법령이 협서율이었다. 협서율이 개시된 진시황 34년(기원전 213)으로부터 햇수로 23년이 지난 뒤의 일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처럼 전통시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 일에 대한 평가는 몹시 후하다. 분서와 협서율이 문화적 폭거였다면, 이를 폐지하는 것은 문명의 재건을 알리는 신호탄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중차대한 일에 대해 사마천은 왜 침묵하였을까? 협서율의 시행을 알리는 李斯의 건의는 상세하게 실어두었던 《사기》에서 말이다.

10) 앞의 주 2) 참조.

11) 앞의 주 7) 참조.

12) 《漢書·惠帝紀》: “四年冬十月壬寅, …… 三月甲子, 皇帝冠, 赦天下. 省法令妨吏民者, 除挾書律.”

13) 《漢書·惠帝紀》注: “應劭曰: ‘挾, 藏也.’ 張晏曰: ‘秦律敢有挾書者族.’”

III. 高祖와 협서울

한의 고조는 진대의 율령이 가혹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진의 가혹한 법치에 지친 백성들을 위무하기 위해 함양에 입성하여 이른바 法三章을 포고하였다. 살인죄와 상해죄, 절도죄를 제외한 모든 법령을 무효화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다단한 국사를 삼장의 법만으로는 다스릴 수 없었다. 이에 相國 蕭何로 하여금 秦法을 참고하여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도록 하였다.¹⁴⁾ 소하는 원래 한고조가 몸을 일으켰던 沛縣의 옥리였다. 당연히 법령에 관심이 많았고, 그러므로 함양에 입성할 당시 진나라의 법령들만 수습하였다. 그때 수습한 진의 법령들을 바탕으로 소하는 九章律을 만들었다. 구장률의 자세한 내용은 전하지 않지만 《晉書·刑法志》에 따르면, 소하는 盜律, 賊律, 網(囚)律, 捕律, 雜律, 具律, 興律, 廐律, 戶律의 9편을 제정하였는데, 앞의 6편은 李悝의 《法經》을 따랐고 뒤의 3편은 새로 제정하였다고 한다.¹⁵⁾ 盜律과 賊律은 절도·상해·살인과 관련한 내용이고, 網(囚)律과 捕律은 구금과 체포에 관한 법률이며, 雜律은 輕狡, 越城, 博戲, 假借, 不廉, 淫侈, 逾制 등을 다스리기 위한 법률이며 具律은 형벌의 가감을 명시한 법률이다.

구장률이 《법경》의 내용을 어디까지 답습하였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李悝가 전국초기 魏나라 인물인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법경》은 협서울과 무관하다. 소하가 새로 제정한 興律은 요역과 관련한 법률이고, 廐律은

14) 《漢書·刑法志》：“漢興，高祖初入關，約法三章曰：‘殺人者死，傷人及盜抵罪。’鑄削煩苛，兆民大說。其後四夷未附，兵革未息，三章之法不足以御奸，于是相國蕭何摭秦法，取其宜于時者，作律九章。”

15) 《晉書·刑法志》：“是時承用秦漢舊律，其文起自魏文侯師李悝。悝撰次諸國法，著法經。以爲王者之政，莫急於盜賊，故其律始於盜賊。盜賊須劾捕，故著網捕二篇。其輕狡·越城·博戲·借假·不廉·淫侈·踰制以爲雜律一篇，又以具律具其加減。是故所著六篇而已。然皆罪名之制也。商君受之以相秦。漢承秦制，蕭何定律，除參夷連坐之罪，增部主見知之條，益事律興·廐·戶三篇，合爲九篇。叔孫通益律所不及，傍章十八篇，張湯越宮律二十七篇，趙禹朝律六篇，合六十篇。”

마필의 관리를 위한 법률이며, 戶律은 호구의 관리를 위한 법률이라고 한다. 소하가 제정한 3편의 법률 역시 협서율과 관련되기 어렵다. 이밖에 叔孫通이 다시 구장률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傍章 18편을 마련하였다고 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서는 논의가 다기하기 때문에 고려의 대상으로 삼지 않기로 한다.¹⁶⁾ 그밖에 張湯의 越宮律 27篇과 趙禹의 朝律 6篇이 있으나 모두 武帝 때 제정된 법률이니 고조와는 무관하다.

전통시대의 학자들은 해제가 협서율을 폐지한 사실에 근거하여 소하의 법률에 협서율이 있었다고 보았으나¹⁷⁾ 이는 추측일 뿐 그 어디에도 그 증거가 없다.

1983년 호북성 형주에서 출토된 張家山漢簡에는 이른바 《二年律令》이 포함되어 있다. 526枚의 죽간에 27종의 律과 1종의 令이 기재된 이 율령은 한초 법률 연구의 획기적 자료가 되었다. 首簡의 이면에 쓰인 ‘二年律令’이란 기록에서 명칭이 유래된 이 율령의 ‘二年’을 두고 학계의 의견은 대략 세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張家山漢簡整理小組의 관점으로 呂后 2년(기원전 186)이라는 견해이고, 다른 하나는 소하가 법령을 제정한 고조 2년(기원전 205)이라는 견해이며, 또 다른 하나는 고조 2년에 제정된 법률을 기본으로 하여 이후 2년까지 부분적으로 보완된 것이라는 견해이다.¹⁸⁾ 이 율령에 협서율의 없는 점 역시 본고의 논지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하다.¹⁹⁾

16) 숙손통의 傍章은 ‘傍’을 보조의 의미로 보아 보조법률로 보거나, 숙손통이 한초에 조정의 의례를 제정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의례와 관련한 규정으로 보는 견해 등, 일반적인 법률로 보지 않는 경향이다. 대체로 의례와 관련한 규정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17) 예컨대 宋의 陳均이 《九朝編年備要》에서 “惠帝除挾書律·三族令, 文帝除誹謗·妖言, 除秘祝法, 皆蕭何法之所有, 而惠與文除之.” 라고 한 언급이나, 呂祖謙이 《大事記解題》에서 ‘除挾書律’을 해제하며, “解題曰: 秦律敢有挾書者族, 秦亡, 此禁雖弛, 然猶載於律, 至是始除之.”라고 한 언급 등이 그러하다.

18) 劉歡, <關於《二年律令》頒行年代的探析>, 《考古與文物》(陝西省考古研究所), 2006年 第02期 참조.

19) 이 율령이 만약 이후 2년의 율령이라면 이미 협서율이 폐지된 해제 이후의 일이니 본고의 논지와 무관하지만, 고조 2년에 소하가 정비한 율령이라면 해제 이전에 이미 협서율이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법삼장은 고조가 함양에 입성할 당시 임시로 공포한 것이므로 이것이 시행된 기간은 극히 짧았을 것이고, 고조 재위기간의 기본 법률은 구장률이었다. 구장률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앞에서 살펴본 바처럼 구장률의 篇題와 구성 등에서 협서율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었다. 새롭게 건국한 왕조가 전조의 법령을 참고하여 새로운 법령을 정비하는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협서율과 관련한 증거가 전무하다면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고조는 불학무식하여 儒者를 싫어하기는 하였다. 儒冠을 쓴 자를 보면 관을 벗겨 소변을 보는 과격적인 행동을 하였다.²⁰⁾ 太中大夫 陸賈가 때때로 《詩》, 《書》를 이야기하면 “말 위에서 천하를 얻었는데, 어찌 《詩》, 《書》를 일삼을 것인가!” 하고 호통을 치기도 하였다.²¹⁾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고조가 재위기간 동안 민간에서 서책을 소장한 자들에게 형벌을 내렸다고 가정할 수 있을까? 물론 그러한 증거는 없으며, 만약 그러한 분위기였다면 위에서처럼 육가가 때때로 《詩》, 《書》를 이야기할 수 없었을 것이다.

고조는 비록 무식하였지만 유가를 탄압하지 않았으며, 유가의 경전도 금지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와 상반된 증거들이 많다. 고조 원년(기원전 206) 10월에 霸上에 이르러 진의 황제 子嬰의 항복을 받고난 뒤, 11월에 고조는 백성들을 불러 모아 法三章을 언급한다.

父老들이 진나라의 가혹한 법을 괴로워한 지 오래되었으니, 비방하는 자는 멸족하고, 서로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자는 기시의 형벌에 처하였다.[偶語者棄市] 내가 제후들과 약속하기를, 먼저 관중에 들어간 자가 왕이 되자고 하였다. 나는 마땅히 관중의 왕이 될 것이니 부로들과 약속하건대, 법을 三章으로 줄일 것이다.²²⁾

20) 《漢書·酈陸朱劉叔孫傳》: “沛公不喜儒, 諸客冠儒冠來者, 沛公輒解其冠, 溺其中.”

21) 같은 책: “賈時時前說稱《詩》·《書》. 高帝罵之曰: ‘乃公居馬上得之, 安事《詩》·《書》.’”

고조가 秦法의 가혹함을 말하면서 예로 든, ‘서로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자는 기시의 형벌에 처하였다.’는 ‘偶語者棄市’의 조항은 바로 ‘서로 마주보고 《詩》, 《書》를 이야기하는 자는 기시의 형벌에 처한다.[偶語詩書者棄市]’는 李斯의 건의에 나오는 협서율을 두고 말한 것이다.²³⁾ 협서율을 가혹한 秦法의 예로 들었던 고조가 재위기간 동안에 이를 다시 시행하였을 리는 없다.

고조 5년(기원전 202), 고조가 마침내 항우를 베었으나 일찍이 항우가 魯公에 봉해졌던 인연으로 노나라가 저항하였다. 고조는 천하의 병사들을 이끌고 노나라를 포위하였는데, 노나라의 유자들은 《詩》, 《書》를 강송하고 예악을 익히고 있었으며, 현가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았다. 고조는 노나라의 이러한 기풍을 오히려 높이 평가하여 병사를 거두고 항우의 머리를 내보여 항복을 권유하였다.²⁴⁾ 이에 노나라가 항복하자, 고조는 항우를 魯公의 예로 장례지내며 친히 發喪하고 곡하였다. 고조 12년(기원전 195) 11월에는 노나라를 지나다가 공자에게 제사를 지내기까지 하였다.²⁵⁾ 이처럼 유풍을 존중하고 진작하였던 고조가 협서율을 시행하였을까?

이쯤에서 의심스러운 것은, 유자를 싫어하고 꾸짖던 고조의 모습과 유풍을 존중하고 진작하는 모습이 조화롭지 못한 점이다. 본심으로는 유자가 싫었으나 통치과정에서 유학을 포용하지 않을 수 없었기에 가장하였던 것일까? 아니면 제왕이 되어 천하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각이 바뀌었던 것일까?

22) 《史記·高祖本紀》元年條: “父老苦秦苛法久矣, 誹謗者族, 偶語者棄市. 吾與諸侯約, 先入關者王之. 吾當王關中, 與父老約法三章耳.”

23) 《史記》의 당해 조문 아래의 《集解》에 “瓚曰: ‘始皇本紀曰, 偶語經書者棄市.’”라고 하였다.

24) 《史記·儒林列傳》: “及高皇帝誅項籍, 舉兵圍魯, 魯中諸儒尚講誦習禮樂, 弦歌之音不絕, 豈非聖人之遺化, 好禮樂之國哉!”

《漢書·高帝紀》: “五年 …… 十二月 …… 灌嬰追斬羽東城. 楚地悉定, 獨魯不下. 漢王引天下兵欲屠之, 爲其守節禮義之國, 乃持羽頭示其父兄, 魯乃降.”

25) 《漢書·高帝紀》: “十一月, 行自淮南還. 過魯, 以太牢祠孔子.”

아마 후자일 것이다. 숙손통은 주지하다시피 진나라에서 待詔博士를 지내다가 고조에게 투항하여 한초의 의례를 정비하였던 인물이다. 고조 5년(기원전 202)에 고조가 황제에 즉위하였으나 진나라의 엄격한 의례를 모두 없앤 뒤라 군신간의 체모가 없었다. 고조 7년에 장락궁을 건축하고 숙손통은 노나라에서 데려온 유생 30인과 함께 의례를 정비하여 비로소 엄숙한 조회를 거행할 수 있었다. 고조는 몹시 만족하여, “내가 오늘에야 황제가 존귀함을 알았다.” 하고 숙손통을 太常에 임명하였다.²⁶⁾ 유학이 황제의 권위를 보장하고 통치에 유용함을 느낀 것이다.

이에 앞서 고조 2년(기원전 205)에 7세의 劉盈이 태자로 책봉되었다. 후일의 혜제이다. 이 때 고조는 태자를 경계하는 글을 직접 지어 내렸다. 그 가운데 한 대목을 보자.

내가 난세를 만나 진나라가 학문을 금하자 스스로 기뻐하며 책을 읽는 것이 유익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임금이 되고 난 뒤로부터 비로소 때때로 책을 살펴보았는데 글 쓴 사람의 의도를 알 수 있었다. 이에 비추어 내가 옛날에 행동하였던 것을 생각해보니 옳지 않은 일이 많았다.²⁷⁾

한고조의 紀元은 漢王에 봉해진 시기부터 시작된다. 황제에 등극한 것은 고조 5년이었으니 고조 2년은 漢王에 봉해진 그 이듬해이다. 고조는 이 시절에 이미 서적에 대한 깨우침이 있었던 것이다.

이상의 정황으로 볼 때 고조는 미천한 시절에 비록 학문과 경전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었으나, 통치자의 지위에 오르면서 점차 생각이 바뀌어갔음을 알 수 있다. 함양에 입성할 당시에 이미 진의 협서율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으며, 점차 유학에 대해 친근감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26) 《史記·劉敬叔孫通列傳》: “漢七年, 長樂宮成, 諸侯群臣皆朝十月 …… 竟朝置酒, 無敢譴諱失禮者. 于是高帝曰: ‘吾乃今日知爲皇帝之貴也.’ 乃拜叔孫通爲太常, 賜金五百斤.”

27) 《古文苑·卷十·手勅太子文》: “吾遭亂世, 當秦禁學, 自喜, 謂讀書無益. 洎踐祚以來, 時方省書, 乃使人知作者之意, 追思昔所行, 多不是.”

이런 그가 협서율을 시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며, 그렇다면 유가를 주 대상으로 한 진의 협서율은 고조 당시에는 유명무실하였다고 할 수 있다. 고조가 협서율을 폐지한다는 조령을 별도로 내리지 않은 것은 아마 내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이미 협서율이 폐지되었다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혜제는 왜 굳이 협서율을 폐지하였을까?

IV. 惠帝는 왜 협서율을 폐지하였는가

이제 혜제가 굳이 협서율을 폐지한 까닭을 추적해보자. 《한서》의 관련조목 전문은 다음과 같다.

皇帝冠, 赦天下. 省法令妨吏民者, 除挾書律.

여기서 “省法令妨吏民者, 除挾書律”은 병렬관계인가, 주종관계인가? 다시 말해서 “관리와 백성들을 괴롭히는 법령을 없애고, 협서율을 폐지하였다.”라고 해석하여 두 가지 사실로 볼 것인가, 아니면 “관리와 백성들을 괴롭히는 법령을 제거하여 협서율을 폐지하였다.”라고 해석하여 한 가지 사실로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中華書局版 표점본 《한서》에는 양자 사이의 문장부호를 ‘;’으로 하여 병렬관계로 보고 있으나, 이는 주종관계로 보아야 할 것이다. 후한의 荀悅은 《漢紀》에서 이 대목을 “三月大赦天下, 除民挾書律.”이라고 적어, “백성들에게 협서율을 폐지해주었다.”는 한 가지 사실로 간주하였고, 송대의 劉友益은 《資治通鑑綱目書法》에서 ‘除挾書律’의 필법을 설명하면서 “위에서 관리와 백성들을 괴롭히는 법령을 없앴다고 적었으니, 이 일은 그 가운데 한 가지이다.”²⁸⁾라고 하였으며, 유우익보다 조금 앞서 呂祖謙도 ‘省法令妨吏民者’는 소하가 죽고 새로이 승상이

28) 《御批資治通鑑綱目》: “上書省法令妨吏民者矣, 此其一也.”

된 曹參의 전반적 정책방향으로, '除挾書律'은 이러한 정책방향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²⁹⁾

순열이나 유우익, 여조겸의 견해에 따른다면, 두 문장은 병렬관계가 아닌 주종관계이며, '가혹한 진법을 없애고자 하여 협서율을 폐지하였다'거나, '가혹한 진법을 없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협서율이었다'라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혜제가 협서율만 폐지하였는지, 혹은 다른 秦法과 함께 협서율을 폐지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협서율 폐지에 초점을 맞춘 것임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문장은 다음과 같이 해석될 것이다.

황제가 冠禮를 행하고 천하의 죄수들을 사면하였으며, 관리와 백성들을 괴롭히는 법령을 제거하였는데, 협서율(도) 폐지하였다.

혜제는 인품이 너그럽고 어질었으나 유약하였다. 사마천은 '爲人仁弱'³⁰⁾이라 하였고, 반고는 '可謂寬仁之主'³¹⁾라고 하였다. 고조가 戚夫人을 사랑하여 그녀의 아들인 如意에게 태자의 자리를 빼앗길 뻔하였으나 張良의 계책으로 商山四皓를 맞이하여 황제가 될 수 있었다. 16세에 등극하였지만 어머니 여태후의 위세에 눌려 포부를 펼칠 수 없었다. 그런 그가 20세가 되어 성인식을 치르고 각오를 새롭게 하였을 것이다. 그 전전혜에 소하가 죽고 당시는 조참이 승상이었다. 새롭게 성인이 된 황제는 백성들에게 보일 상징적인 조치가 필요했다. 소하의 政令을 묵수하기로 유명한³²⁾ 승

29) 呂祖謙, 《大事記解題》: “省法令妨吏民者, 解題曰: 此曹相國之政也. 除挾書律, 解題曰: 秦律敢有挾書者族, 秦亡, 此禁雖弛, 然猶載於律, 至是始除之.”

30) 《史記·呂太后本紀》

31) 《漢書·惠帝紀》

32) 《史記·曹相國世家》: “參免冠謝曰: ‘陛下自察聖武孰與高帝?’ 上曰: ‘朕乃安敢望先帝乎!’ 曰: ‘陛下觀臣能孰與蕭何賢?’ 上曰: ‘君似不及也.’ 參曰: ‘陛下言之是也, 且高帝與蕭何定天下, 法令既明, 今陛下垂拱, 參等守職, 遵而勿失, 不亦可乎?’ 惠帝曰: ‘善, 君休矣!’ 參爲漢相國, 出入三年, 卒諡懿侯.”

상 조침이 할 수 있는 것은 개혁적인 조치가 아니었다. 상징성만 띠면 되는 일이었다.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조치가 협서율의 폐지였다.

문치를 표방하며 학문을 숭상하는 너그러움을 보이기에는 협서율이 제격이었을 것이다. 이미 있으나마나하던 협서율이었지만, 성인이 된 황제는 유명무실하던 그 협서율을 끄집어내어 자신의 冠禮를 기념하였던 것이다. 아마 협서율의 폐지가 가지는 의미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마천은 이에 대해 침묵하였을 것이다. 역사적 의의를 가진 개혁적인 조치였다면 사마천이 침묵할 까닭이 없다.

너그럽고 어질며 호학하였던 혜제는 혹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다. 진시황이 없애버린 호학의 기풍을 되살리고 사라진 책들이 다시 나오도록 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목적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점이 또한 사마천이 침묵하는 또다른 이유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자료를 보자.

반고에 앞서 협서율 폐지를 언급한 유일한 문헌은 劉歆의 <移讓太常博士書>이다. 반고는 ‘除挾書律’ 네 글자만 기록하였으나, 명문으로 알려진 유흠의 이 글에는 몇 마디 말이 첨가되어 있다.

효혜황제의 시대에 이르러 이에 협서율을 폐지하였으나, 絳侯 周勃과 灌嬰 등을 비롯한 공경대신들이 모두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쓴 武夫들이어서 여기에 뜻을 두지 않았다.³³⁾

혜제가 협서율을 폐지하였으나 무신 관료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협서율 폐지는 기존의 법령 하나를 삭제한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다. 그런데 유흠은 이것이 잘 시행되지 않았다는 말하고 있는 것이다. 법령을 없앴는데 관료들이 잘 시행하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해답은 유흠의 이어지는 글에 나타난다.

33) 《漢書·劉歆傳》：“至孝惠之世，乃除挾書之律。然公卿大臣絳·灌之屬，咸介冑武夫，莫以爲意。”

효무황제에 이르러 비로소 掌故 晁錯로 하여금 伏生을 좇아 《尚書》를 전수받도록 하였다. 《상서》는 처음 屋壁에서 나올 때 죽간이 썩고 부러지고 분해되어 흩어진 상태였는데, 지금 그 책이 남아 있어 오늘날 經師들이 전하여 읽고 있을 따름이다. 《시경》이 비로소 연구되기 시작하였고, 천하의 여러 책들이 왕왕 쏟아져 나왔으나 모두 諸子들이 전한 학설이었다. 그러나 오히려 널리 학관에 설치하고 박사를 두게 되었으나 조정에 있는 유자는 오직 賈誼 한 사람이었다. 효무황제에 이르러서야 鄒, 魯, 梁, 趙 지역에 있던 《詩》, 《禮》, 《春秋》의 스승들이 建元 연간에 모두 나오게 되었다.³⁴⁾

유흠은 협서율의 효과가 문제와 무제에 이르러 나타나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으며, 그 효과는 유학의 부흥과 경전의 수집이었다. 혜제가 유학을 부흥시키고 사라진 경전을 수집하고자 협서율을 폐지하였으나 무부 관료들의 무관심으로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다. 임금은 유약하였고, 승상은 새로운 일을 하고자 하지 않았으며, 관료들은 경전의 수집에 관심이 없었다. 협서율 폐지가 일회성의 상징적 조치로 끝나버리고 만 것이다.

전통시대의 학자들은 종종 협서율의 폐지를 문제, 혹은 무제 시대의 일로 착각하곤 하였다.³⁵⁾ 이는 역사적 사실을 잘못 파악한 까닭도 있겠으나, 협서율이 유학의 부흥과 경전의 수집과 연계되어 있다는 인식이 빚은 오류일 수도 있을 것이다. 혜제 재위기간 동안 獻書의 사실이 전혀 없고, 문제와 무제에 이르러서야 경전이 수집되기 시작하고 유학이 학술의 전면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혜제의 협서율 폐지는 이미 폐지가 필요 없는 일이었다. 협서율이 시행

34) 같은 책: “至孝文皇帝, 始使掌故晁錯, 從伏生受尚書. 尚書初出于屋壁, 朽折散絕, 今其書見在, 時師傳讀而已. 詩始萌芽, 天下聚書, 往往頗出, 皆諸子傳說, 猶廣立于學官, 爲置博士. 在朝之儒, 唯賈生而已. 至孝武皇帝, 然後鄒魯梁趙, 頗有詩禮春秋先師, 皆出于建元之間.”

35) 《重校宋本十三經注疏·周禮注疏·序周禮廢興》: “孝武帝始除挾書之律, 開獻書之路, 既出於山巖屋壁, 復入于秘府.”

《重校宋本十三經注疏·周禮注疏·春官宗伯·小宗伯 疏》: “文帝除挾書之律, 此本然後行於世, 故稱古文.”

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필요 없는 일을 진대의 혹정과 차별성을 드러내기 위해 굳이 한 것이다. 이 상징적인 조치는 효과가 전무하였다. 결론적으로 협서율의 폐지는 사마천이 무시해도 좋을 만큼 동기와 내용과 효과가 모두 보잘것없는 일이었다.

V. 결 론

협서율은 진시황이 기원전 213년에 분서를 단행하며 시행한 법률이다. 박사관청에서 박사의 직무상 소장하는 책과 醫藥과 卜筮와 種樹의 책을 제외하고는 개인이 도서를 소장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이 법률은 한 혜제가 기원전 191년에 폐지할 때까지 23년간 존치되었으나 고조 유방이 한나라를 건국하고 난 뒤에도 시행되었는가의 문제 등 의문이 없지 않다. 기존의 논의들이 대체로 서적의 유통과 장서의 공인 등, 협서율의 폐지가 가지는 의의를 긍정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본고는 이러한 견해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挾書律이 존속한 기간은 진시황 34년(기원전 213)부터 한 혜제 4년(기원전 191)까지 23년이지만, 적어도 한 고조 원년(기원전 206)부터는 전혀 시행된 적이 없는 법률이었다.

둘째, 한고조는 비록 초기에 유학을 싫어하였으나 고조 원년 10월에 함양에 입성하여 11월에 法三章을 약속할 당시에 이미 협서율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으며, 이후 점차 유학적 가치를 존중하게 되었다.

셋째, 고조 당시의 법령인 九章律에서는 전혀 협서율의 단서를 찾을 수 없으며, 혹 조항이 있었다면 이미 사문화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넷째, 혜제가 협서율을 폐지할 시기에는 이미 협서율이 전혀 효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다. 이 시기에 혜제가 굳이 협서율을 폐지한 것은 자신의 冠禮를 맞이하여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함이었다. 협서율은 문치를 표방하며 상징적으로 취한 조치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다섯째, 혹 혜제가 유학의 부흥과 사라진 경전의 수집을 기대하였을 수도 있으나, 효과가 전혀 없었다.

여섯째, 사마천이 《사기》에서 협서율 폐지를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이처럼 동기와 내용 및 효과 등의 면에서 고려할 가치가 없는 일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參考文獻>

- 《史記》，中華書局 標點本。
《漢書》，中華書局 標點本。
《晉書》，中華書局 標點本。
《周禮注疏》，重宋本十三經注疏本。
《古文苑》，《文淵閣四庫全書》本。
《御批資治通鑑綱目》，《文淵閣四庫全書》本。
荀悅，《漢紀》，《文淵閣四庫全書》本。
王應麟，《困學紀聞》，《文淵閣四庫全書》本。
呂祖謙，《大事記解題》，《文淵閣四庫全書》本。
陳均，《九朝編年備要》，《文淵閣四庫全書》本。
李學勤，〈從出土簡帛談到〈挾書律〉〉，《周秦漢唐研究》(黃留珠 主編，三秦出版社，1998) 제1책。
劉歡，〈關於《二年律令》頒行年代的探析〉，《考古與文物》(陝西省考古研究所)，2006年 第02期。
李銳，〈秦焚書考〉，《人文雜誌》(陝西省社會科學院)，2010年 第5期。
陳靜，〈西漢“除挾書律”的歷史意義〉，《齊魯學刊》(曲阜師大)，2005年 第2期。
李玉安，〈論《挾書律》〉，《圖書情報知識》(武漢大學傳播與信息學院)，2010年 第5期。

邊家珍, <禮制的重建: 劉歆爭立古文經的再認識>, 《河南科技大學學報》, 2003年 3月.

李宏玉, <淺談“除挾書律”>, 《科教創新》, 雲南省科學技術廳, 2011年 第10期.

<中文提要>

西汉惠帝四年(公元前191年), 西汉政府宣布废除秦始皇焚书时颁布的“挟书律”。然而对于这项法令在汉高祖刘邦执政期间的推行与否、以及惠帝宣布废除“挟书律”的动机及效果等问题, 仍有疑义。本文依据相关史料及先行研究, 对以上问题进行检讨, 得到如下结论:

第一, “挟书律”存在时间为秦始皇三十四年(公元前213年)到汉惠帝四年(公元前191年), 共二十三年, 但实际上从高祖元年(公元前206年)开始, 这项法令就已成为形同虚设的“死法”。理由在于, (1) 高祖定鼎天下之前厌恶儒学, 但从他执政元年十一月向百姓提出的“约法三章”看, 当时他已经认识到“挟书律”是一项“恶法”, 表明他对儒学的态度有所转变。到他被封为汉王以后, 逐渐认识到儒学对于维护其统治的作用, 从而认同了儒学的价值。(2) 从高祖执政后颁布的法令——“九章律”来看, 这项法令, 无论从内容上还是从结构上全然找不到“挟书律”的痕迹。由此可以推知, 当时“挟书律”的存在形同虚设, 是一项毫无约束力的法规。

第二, 惠帝宣布废除一部没有实际效力的“死法”, 其真实意图值得关注。考察他废除“挟书律”的时间, 与他的冠礼相吻合, 由此推断其废除“挟书律”的事件与纪念他的冠礼相关, 只有象征性的意义。其实, 实际效果也没有。

第三, 司马迁的《史记》中并未提及惠帝废除“挟书律”之事件, 其原因是值得探讨。从司马迁本人来看, 可能他认为该事件没有实质性意义, 从其动机、过程、内容以及效果上看都不值得记录。

주제어 : 挾書律, 焚書坑儒, 漢高祖, 九章律, 漢惠帝, 《史記》, 《漢書》